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4. 10.

특 허 청
(디자인심사정책과)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진정한 창작자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창작자의 정정 가능시기를 조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디자인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기재사항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창작자 정정 절차의 합리적 개선(안 제50조)

정정시기 일부 제한(등록결정~설정등록) 및 증명서류 강화

나.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규정 삭제(안 제42조 및 제62조)

무권리자 출원임을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등이 확정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에 통지 절차 삭제

다. 출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명확화(별지 제3호서식)

기재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추가 및 부적합한 관리항목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를 삭제한다.

제5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이후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창작자를 정정할 수 있다.

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출원인이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전에 창작자를 추가(제1항 본문에 따른 창작자의 추가는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만 해당한다) 또는 정정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(절차보완)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할 때 창작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창작자의 기재가 누락(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누락에 한정한다)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창작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5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보정이유를 기재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
2.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

③ 디자인권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에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창작자의 기재가 누락(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누락에 한정한다) 또는 잘못 적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디자인권자 및 신청 전·후 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

2.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
 제62조제1항제3호 중 “**무권리자임**”을 “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(이하 “무권리자”라 한다)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6호가목 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국가연구개발사업	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	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32조제5항
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6호마목 1) 중 “**【기여율】**, ”을 삭제하고, 같은 목 2) 중 “**시스템(NTIS)**”를 “**서비스(NTIS)**”로, “**【과제관리(전문)기관명] 란은**”을 “**【부처명] 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. 【과제관리(전문)기관명] 란은**”으로 하며, “**【기여율] 란은 이 발명을 지원한 과제가 1개인 경우에는 1/1로 적고,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별 기여율을 ○/□과 같이 분수로 적되, 총합이 1이 되도록 적습니다.**”를 삭제하고, 같은 목 2)[예] 외의 부분에 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목 2)[예] 중 “**【기여**

을】 1/2”을 각각 삭제한다.

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

(1)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1호). 따라서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로서 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32조제5항). 또한, 이 발명을 지원한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.

(2)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에서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전인 경우에는 **【과제고유번호】**란에 “미부여”로 적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출원서 등의 보정을 통해 반드시 과제고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
부 칙

제1조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1항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창작자의 기재가 누락(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누락에 한정한다)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 및 신청 전·후 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전: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

2.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: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

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출원인이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전에 창작자를 추가(제1항 본문에 따른 창작자의 추가는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만 해당한다) 또는 정정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(절차보완)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할 때 창작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창작자의 기재가 누락(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누락에 한정한다)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창작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보정이유를 기재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

2.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

③ 디자인권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에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

② ~ ④ (생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